발생량·유해성·지역여건 등 종합 고려해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마련 필요

폐기물관리법, 건강·환경에 피해주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별도 관리 규정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는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성분이 포함된 폐기물도 있다. 유해성분은 인화성, 폭발성, 감염성, 독성, 환경위해성 등 다양 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체노출 시 가볍게는 피부자극이나 충혈, 기침 을 유발하고 심하게는 장기독성, 암발생을 일으키거나 사망까지 이르게 하며, 환경 노출 시 수생태계에 유독한 장/단기의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인한 건강 및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 정의하고, 유해성을 기반으로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으로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하게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별도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표 1] 폐기물관리법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계획의 수립 관련 규정

| 법령 | 내용 | |
|---------------------|---|--|
|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 |
| |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 |
| 폐기 물 관리법 |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
| |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 |
| 제14조의4 | 평가하여야 한다. | |
| (<u>생활계</u> |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 |
| 유해폐기물 |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 |
| 처리계획의 수립 |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지원 방안(재원의 | |
| 등) |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 |
| |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절차 및 추진성과의 | |
| |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 |

미국·유럽 등 선진국, 관리품목 배출·수거·처리절차 마련해 체계적인 관리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도시는 관리품목선정, 배출지침, 수거체계 및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자치단체별 홈페이지를 통해관리품목을 상세히 안내하고, 배출지침을 제공하여 배출자가 직접 수거지점에 배출하면, 숙련된 전문가가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처리과정에 맞게 분류하여 처리한다. 또한소비자가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정용제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유해성 픽토그램을 제품에 표기하여 사용과 폐기에 주의하도록 하며, 폐기물 원천감량을 위한 Safer Choice 프로그램 및 가정에서 제작 가능한 친환경 대체제품 제작법 등을 알려준다.

[표 2] 국외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방법

| 분류 | 관리방법 | | |
|------|--|--|--|
| 관리품목 | 자동차 관련용품, 가정용 세정제, 접착제, 광택제, 페인트 관련용품, 에어로졸, 소화기, 가정용 의료폐기물(주사기, 란셋 등), 가스탱크 등 다양한 품목이 가정계 유해폐기물로 정의되어 관리 수거지점별 수거가능품목과 수거불가능품목을 구분하여 세부품목 안내 | | |
| 배출지침 | 본래 용기에 본래의 라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 밀봉하여 배출 라벨이 훼손된 경우 작성하여 배출하거나 모르는 경우 '알 수 없는 가정계 유해폐기물'로 작성하여 배출 혼합하여 배출 금지 수거지점으로 직접 배출하며, 배출 시 숙련된 전문가의 지침을 따름 | | |
| 수거방법 |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복합배출 시행 주로 거점수거지역을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배출하도록 유도 접근이 어려운 거주민을 위해 이벤트수거, 이동식 차량수거, 자치단체 신청을 통한 직접 수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 | |
| 기타 |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정사용제품 구분을 위한 픽토그램 사용 발생량 감소를 위한 친환경 대체제품 사용 유도 및 대체제품 제작방법 등 안내 | | |

국내의 경우 충남 청양군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를 위해 2021.07.13. 「청양군 폐기물 관리조례」 제8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를 신설하여 관리하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 안산시 등은 폐의약품, 폐형광등, 폐전지를 포함 수은온도계, 폐살충제, 폐페인트, 폐주사기 등을 생활계 유해폐기물 품목으로 선정하고,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관리 중이다.

아직 관리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서울시는 체계적인 생활계 유해폐기물 퉁합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외 우수 관리사례를 발굴하고 검토하여 서울시 특성에 맞게보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폐전지 등 일부 품목 수거…개선여지 많고 품목별로 담당부서 달라

서울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품목 중 폐의약품은 약사법에, 수은함유폐기물 중 폐형 광등과 폐전지는 생산자재활용의무제도에 기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각각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자치구 또는 재활용협회가 수거 및 처리한다. 폐페인트와 폐락카는 한 강유역환경청에 소량배출 지정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신청하고 kg당 600원의 수수료 (운반서비스 요청 시 회당 20,000원)를 부담하면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폐형광등과 폐전지는 자원순환과나 청소행정과, 폐의약품은 자원순환과나 보건소, 폐페인트와 폐락카는 환경과 등 품목별로 다른 행정부서가 담당하고 있으며, 잦은 인사이동 및 자료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서울시 자치구 수준에서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체계는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폐형광등은 수거량 감소 및 LED 전구로의 전환기를 고려하여 향후 LED 전구를 포함한 재활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폐형광등 재활용을 위한 재원마련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폐전지는 혼합 배출되면 선별이 어렵기 때문에배출단계에서 분리수거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손선풍기, 손난로, 전자담배등에 내장되는 리튬전지는 충격이 가해질 경우 폭발 및 화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수거 및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폐의약품은 다른 품목에 비해 조례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중이며, 수거함이용의 불편에 따른 분리배출 실천율 증진 및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개선된 관리대책에 따른 효과평가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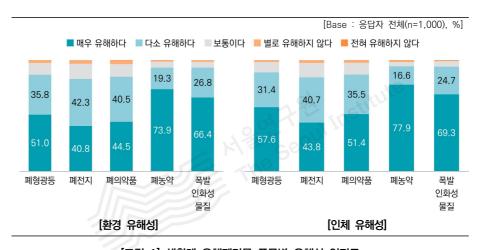
자치구, 배출·수거·처리지침 없고 재정·행정 업무 부담 등이 주요 애로사항

폐기물관리법은 자치구 단위에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처리계획을 수립한 서울시 자치구는 없다. 자치구 수준에서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한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을 조사한 결과 가장 어려운 점으로 소량발생폐기물의 별도 관리를 위한 재정 및 행정적 업무 부담이 가장 크고, 다음은 배출 및 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부족이다.

자치구 담당자가 바라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한 지원 및 건의 사항은 품목별 수거·처리사업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이었다. 또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 처리계획 표준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소량 배출되는 폐기물로 인한 행정업무 과중, 극소량 배출 항목에 대해 자치구 단위가 아닌 통합지역 단위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 견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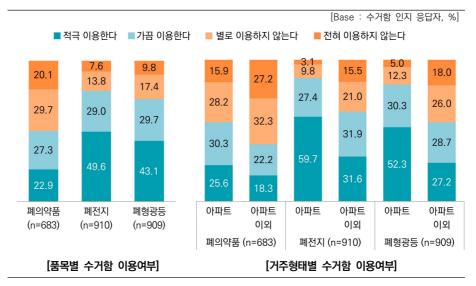
시민, 환경·인체 유해성 인지도 높아…배출참여율, 폐형광등·폐전지, 아파트 높아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유해성 인지도 조사 결과, 모든 품목에 대해 환경위해성은 80% 이상, 건강위해성은 90% 이상 유해하다고 인지하였고, 응답자의 90% 이상이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별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 생활계 유해폐기물 품목별 유해성 인지도

폐형광등과 폐전지 전용수거함의 인지도는 약 91%였고, 폐의약품은 68.6%였다. 수거함 인지대상자의 전용수거함 이용률은 폐형광등이 72.8%, 폐전지는 78.6%, 폐의약품은 50.1%였다. 거주형태별로는 전용수거함이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가 단독주택/빌라/연립보다 수거함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았다. 또한 서울시 일부자치구의 수거함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아파트 및 상가에 수거함이 밀집되어 분포하는 등 수거함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다. 따라서 배출편의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거함을 확대하는 등의 수거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림 2] 전용수거함 이용여부

시민 80% 이상 "향후 전용수거함이 마련되면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것"

서울시민의 지난 1년간 생활계 유해폐기물 품목별 배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품목에서 소량배출 특성을 나타냈다. 배출장소를 살펴보면, 폐형광등과 폐전지는 전용수거함의 이용률이 70% 정도로 나타났다. 폐의약품은 약국에 직접 배출해야 하는 불편 등으로 인해 전용수거함의 실제 이용률이 20% 미만이고, 38%가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서울시가 폐의약품 전용수거함 확대 및 수거처리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전용수거함 이용률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농약은 서울시민 1,000명 중 80명만이 구매경험이 있으며, 122명이 폐농약을 보관하고 있다. 폐농약 발생량이 적어도 폐농약의 유해성을 고려할 때 수거체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폭발 인화성 물질에 대해서도 지금은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고 있으나 별도 수거함을 마련하는 등 수거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향후 전용수거함이 마련될 경우 시민의 80% 이상이 적극 분리배출에 참여할 것으로 조사되었고, 선호하는 배출장소 및 배출방법은 주거지역에서 가깝고 자유롭게 수시로 배출할 수 있는 곳이었다. 다만 폐농약은 관리자가 있는 동 주민센터에 배출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이는 유해성이 높은 관리대상품목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시민의 잠재적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3] 서울시민의 지난 1년간 생활계 유해폐기물 품목별 배출현황 및 향후 분리배출 참여의향

| | 구분 | 폐의약품 (처방약 가루약 기준) | 폐형광등 | 폐전지(일회용 기준) | 폐농약 | 폭발 인화성 물질 (살충제 기준) |
|-------------|------------------------------------|---|--|--|---------------------------------------|--|
| 다양 목 이상이 때주 | 구매량 | 1~3일분(56.6%) 4~7일분(33.5%) | 1~5개(44.8%) 구매 안 함(42.8%) | 1~57ዘ(28.1%) 6~107ዘ(26.1%) 11~207ዘ(21.5%) | | 1~3개(51.2%), 구매 안 함(37.0%) |
| | 구매빈도 | 연 1~2회(41.3%) 연 3~6회(39.3%) | 연 1~2회(74.1%) 연 3~4회(16.6%) | 연 1~3회(66.9%) 연 4~6회(24.2%) | | 연 1~3회(84.1%) 연 4~6회(10.3%) |
| | 버려야 하지만 보관하고 있는 양 | 0컵(42.8%) 0.1~0.5컵(23.4%) 0.6~1컵(22.1) | 보관하고 있지 않음(76.0%) 1~5개(16.8%) | 보관하지 않음(51.6%) 1~5개(26.6%) 6~10개(13.0%) | | 보관하지 않음(50.0%) 1~3개(44.6%) |
| |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이유 (처리 시 어려운 점) |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 (40.9%) 버리는 곳을 몰라서(23.8%) 버리는 곳은 알지만 번거로워서(23.3%) | 파손 위험성(31.5%) 수거함이 멀리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15.2%) | 어려운 점이 없다(43.5%) 전용 수거함이 멀리 있다(22.4%) 수거함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21.3%) | 응답자의 94.6%가 최근 1년간 농약 사용 안 함 | - |
| | (구매량 대비) 버리는 양 | 10% 미만(49.1%) 10~30% 미만(40.1%) | 버리지 않음(46.8%) 1~5개(45.0%) | 1~5개(38.4%), 6~10개(23.8%) 버린 적 없음(16.7%) | | 버린 적 없음(55.9%), 1~3개(37.2%) |
| | 버리는 횟수 | 버린 적 없음(71.1%) 연 1~2회(19.6%) | 연 1~2회(75.0%) 연 3~4회(16.1%) | 연 1~3회(64.0%) 연 4~6회(25.5%) | | 연 1~3회(83.7%) |
| | 배출장소 | 쓰레기통(종량제봉투) 배출(38.7%) 약국에 가져감(14.7%) | 전용수거함(68.4%) 쓰레기통(종량제봉투) 배출(16.2%) | 폐전지 전용수거함(71.1%) 쓰레기통(종량제봉투) 배출(20.6%) | |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53.8%) 쓰레기통(종량제봉투) 배출(11.6%) |
| | 수거함 이용의향 | 81.0% | 85.4% | 88.2% | - | 85.5% |
| 향후 의향 | 선호 배출장소 | 버리기 편한 아파트 내, 동네 어귀(48.4%) 약국, 보건소 등 판매업소(27.8%) | 버리기 편한 아파트 내, 동네 어귀(72.1%) 관리자가 있는 동주민센터(20.3%) | 버리기 편한 아파트 내, 동네 어귀(70.9%) 관리자가 있는 동주민센터(17.7%) | 동주민센터(38. 6%) | 주거지역(아파트 내 등) 수거지점에 내놓는다(50.2%) |
| | 선호 배출방법 | 수시로 자유롭게 배출(67.0%) 수거가 용이하도록 정해진 요일 배출(20.6%) | 수시로 자유롭게 배출(67.9%) 수거가 용이하도록 정해진 요일 배출(22.4%) | 수시로 자유롭게 배출(74.6%) 수거가 용이하도록 정해진 요일 배출(18.5%) | 수시로 자유롭게 배출, 지정날짜에 배출 | 주민센터에 가져간다(18.0%) 수거행사 등 지정된 날짜에 배출(15.4%) |

생활계 유해폐기물 유해성·발생량·지역여건 고려해 관리대상품목 선정 필요

폐기물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품목은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 유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이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폐형광등과 폐전지, 폐의약품이다. 따라서 서울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품목은 법에서 요구되는 관리품목을 포함하여,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유해성, 잠재적 발생량,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시에 맞는 품목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를 고려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표 4] 서울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대상품목 선정(안)

| 구분 | | 세부관리품목 |
|---------------|------------|---|
| 폐농약 | | 폐농약(제초제, 살충제, 비료 등 원예용품) 영농폐기물(폐농약용기, 농촌 폐비닐) |
| 폐의약품 | | • 처방조제의약품, 일반의약품, 반려동물의약품 |
| 수은함유 폐기물 | 폐형광등 | 폐형광등 |
| | 폐전지 | 폐전지 |
| | 기타 수은함유폐기물 | • 온도계, 혈압계, 체온계 등 |
|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 | • 라돈침대, 건강매트 등 |
| | 생활화학제품 | • 폐페인트, 폐락카, 폐접착체, 폐광택제, 가정용 다목적 세정제, 에어로졸, 스프레이 캔 등 |
| 기타 | 소형전자제품 | • 전자담배, 손난로, 손선풍기, 무선이어폰, 무선게임기 등 |
| | 생활폐목재 | 생활폐목재 |
| | 의료폐기물 | • 주사기, 란셋 등 |

시·자치구 관리여건 등 감안해 시민참여 쉬운 분리배출·수거·처리체계 마련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잘 관리되기 위해서는 제안된 품목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 인 분리배출 및 처리경로가 구축되어야 한다. 서울시민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분리 배출을 배출하기 쉽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기를 원한다. 따라서 시와 자치구의 관리여건 및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분리배출 방안과 수거 및 처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분리배출에 관한 지침은 공통배출지침을 포함하여 세부 품목별 별도의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서울시민이 생활폐기물 중 어떠한 품목이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기 쉽게 세부관리품목을 안내하고,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 역시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서울시의 주요 수거방안으로 자치구별 1개소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거점수거센터를 운영하도록 한다. 배출되는 폐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감독하에 배출하도 록 한다. 보조수거방안으로 직접 배출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월 1회 이상의 이동식 유해폐기물 수거차량의 순회수거서비스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배출 용이성 증진 을 위한 대안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생산자 의무강회를 통해 판매점을 통한 역회수 체계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시행 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5] 서울시 생활계 공통배출지침 및 수거방안

| 구분 | 내용 | |
|--------|---|--|
| 공통배출지침 | 1. 제품을 혼합하여 배출 금지 2. 내용물이 남아 있는 경우 본래 용기의 라벨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밀봉하여 파손 및 누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여 배출 3. 용기가 파손되어 누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더 큰 용기(플라스틱 통 등)에 담아라벨을 적어 배출 | |
| 수거방안 | 1. 발생량 및 관리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점수거센터를 주요 수거방안으로 설정 2. 발생량 및 자치구 여건을 고려하여 이벤트 수거 및 소방서, 경찰서, 주민센터 소규모의 생활계유해폐기물 전용 수거 컨테이너설치 등을 보조 수거방안으로 운 ※ 수거센터는 혼잡도를 고려하여 지정일 배출 또는 예약제 등 도입 검토 3. 폐형광등, 폐전지, 폐의약품은 기존의 수거함을 유지하면서 거점 및 이벤트 수가 보조 수거방안으로 활용 4. 시민 배출 편의성 증진을 위한 생산자 의무강화 및 판매점 역회수체계 순차 도 5. 유해성이 높은 품목은 관리자 및 선별 전문가의 관리하에 수거 | |

서울시, 유해폐기물 통합관리 위해 전담센터 운영 등 인프라 구축 바람직

서울시는 현재 폐형광등, 폐전지, 폐의약품에 한해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전반적인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로부터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 실행력을 강화하고 선도적이고 중장 기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여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유해폐기물 전담센터(또는 전담부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서울시 유해폐기물 전담센터의 역할

폐기물관리법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등에 관한 지침(제정 '22.2.28.)"을 고시하였다. 이에 자치구는 지침을 기반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현황과 미래 배출전망, 총 처리계획 목표 및 연도별 세부 처리목표,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시행사업, 연도별 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등이 포함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표 6] 자치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주요내용

| 구분 | 내용 | |
|----------------------|---|--|
| 현황과 전망 | 관리 현황(인력 및 조직 현황, 인프라 현황, 예산 현황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수거·처리 현황 및 성과 생활계 유해폐기물 잠재적 발생량 전망 | |
| 처리계획의 목표 수립 | 세부관리품목 선정 잠재적 발생량을 고려하여 연도별 목표 수립 | |
| 목표 달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 세부관리품목 선정 품목별 발생량, 지역 여건을 고려한 배출방법 및 지침, 수거 방법 및 수거주체, 운송 및 적정처리를 위한 세부 시행사업 계획 구민 분리배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세부사업 계획 세부사업별 예산운용계획 자치구 수준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세부사업은 시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한 관리체계 마련 | |
| 성과측정 지표 및 평가방안 | 시행계획의 연도별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평가위원회는 시 담당부서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운영 | |

서울시와 자치구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한 조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조례정비를 통한 제도적 기반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부터 사용 후 폐기하는 소비자까지, 유해폐기물의 수거주체인 자치구부터 중앙정부까지 다양한 주체가참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위한 주체별 역할을 분담하고 적극 실천해야 한다.

[표 7] 서울특별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조례(안)

서울특별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조례(안)

서울특별시 OO구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예시) 서울특별시 OO구 OOOOO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OO구에서 발생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다.
- 2. "관리품목"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와 관련한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역할을 한다.

- ②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에 따라 구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연도별 세부계획을 포함하여 5년 주기로 수립하며,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 방지와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품목별 배출·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⑦ 구정창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수거하여 품목의 특성에 맞는 절차대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품목으로 포함된 생활제품에 대해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준수하고, 덜 유해하거나 유해성이 없는 대채제품을 사용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 시 각 품목의 배출지침에 따라 가까운 서울특별시 OO구 거점수거센터, 또는 이동식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트럭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수집 운반 및 처리) 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대행 및 안전기준은 폐기물 관리조례의 제OO조 처리대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조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표 8] 생활계 유해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참여 주체별 역할

| 주체 | 역할 |
|-------------|--|
| 중앙정부 |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지침 마련 품목별 관리가이드라인 마련 분리배출 편의성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분리배출표지제도 생활계유해폐기물 포함 등) 및 생산자 의무강화 등 제도 보완 대체성분 개발 등 연구지원 |
| 서울시 | 유해폐기물 관리사업 총괄기획 및 추진 유해폐기물 전담센터 선정(지정) 및 지원 자치구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시민대상 홍보 및 교육 |
| 자치구 | 관리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전담인력 지정 처리계획 수립 및 운영 수거/운송/처리 등 전반적 관리 발생 및 처리통계 작성 발생량, 처리실적 보고, 구민대상 홍보 및 교육 |
| 배출자 | 제품사용법 및 관리지침 준수 친환경 대체제품 사용 배출지침에 따른 분리배출 적극참여 |
| 생산/ 수입업체 | • 유해성분 감량화 • 대체성분 개발 • 라벨링 등 분리배출 개선제도 참여 |
| 운송/ 처리업체 | 유해성을 고려한 안전한 운송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적정처리 입고량, 처리방식, 처리량 등 체계화된 보고 |